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통 보 요 구

제 목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태안군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주사 ○○○

②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서기 ○○○

③ 충청남도 태안군 ○○읍사무소 지방○○주사 ○○○
(전 ○○과)

④ 충청남도 태안군 ○○과 지방○○서기 ○○○

내 용

지방○○주사 ○○○은 2014. 1. 1.부터 2015. 1. 12.까지, 지방○○서기 ○○○은 2015. 1. 13.부터 2017. 1. 31.까지, 지방○○주사 ○○○은 2017. 2. 1.부터 2017. 7. 6.까지, 지방○○서기 ○○○은 2017. 7. 7.부터 현재까지 각각 충청남도 태안군 ○○과에서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정부는 수급불안,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국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관리 양곡 수급계획을 세워 고시하고,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농협, 개인 등 양곡창고에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아래 [표1]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현황’과 같이 농협(293개) 및 민간(260개)이 소유하고 있는 총 553개의 창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

여 정부양곡을 보관·관리하고 있다.

[표1]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현황

시군명	창고수			등급별				창고면적 (㎡)	보관능력 (톤)
	계	농협	민간	저온	특급	1등급	2등급		
합계	553	293	260	41	36	483	29	258,724	480,522
천안시	25	19	6	3		21		12,130	22,317
공주시	42	35	7			42		13,833	25,366
보령시	28	28				25	3	9,457	16,726
아산시	26	11	15	2	8	5	11	19,844	33,788
서산시	44	27	17		3	37	4	24,359	44,353
논산시	69	35	34	7	5	57		28,651	53,728
계룡시	1		1			1		300	623
당진시	49	22	27		11	38		44,525	85,513
금산군	43		43	1		33		15,859	29,741
부여군	72	51	21	2	1	66	3	25,783	47,971
서천군	26	9	17	13	1	10	2	12,000	22,138
청양군	42	2	40	1		39	2	15,309	27,849
홍성군	25	24	1			22	3	9,221	17,399
예산군	38	15	23	2	6	30		19,740	38,408
태안군	23	15	8	1		21	1	7,705	14,502

그리고 「2014년 정부양곡안전보관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군 직원으로 하여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확인반을 편성하여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창고등급사정기준표’¹⁾에 근거하여 창고등급사정표로 등급을 사정하되, 각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기준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등급별 점수에 적용하여 창고등급을 결정²⁾한 후 등급별 점수에 따라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를 저온, 특급, 1급, 2급, 3급, 등외로 구분하여 월 단위로 양곡보관료를 창고

1) 창고등급사정기준표 일반창고 등급 평가기준 : 창고면적(20점), 창고높이(20점), 지붕(15점), 벽체(15점), 바닥방수여부(15점) 출입문(10점), 노후도(10점), 가점(2~3점), 감점(5~10점)

2) 등급별 점수 : 특급(95점 이상), 1급(94~85점), 2급(84~70점), 3급(69~55점), 등외(54~40점)

보관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고 보관업주는 양곡의 품위안정 및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 쥐 및 새 피해방지와 각종 재해 예방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관양곡의 품질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적정 온·습도 유지, 병해충 방제 등 정부양곡안전보관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관업주의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군수는 양곡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보관상태를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보관창고점검부’에 기재하여 창고등급 결정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3회 지적되거나 최초 시정지시일의 2배 일수가 경과되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부실창고에 대해서는 아래 [표2] ‘부실창고에 대한 제재 조치 사항’과 같이 정부양곡보관창고 보관료 차하등급 적용 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표2] 부실창고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1~2회	3회	4회	5회
시정지시	시정지시 보관료 차하등급	시정조치	보관계약 해제

※ 쥐 피해방제, 해충발생예방, 보관우려곡 순위별 출고, 창고관리인 현장부재(무인경비시스템 설치창고는 제외)에 대한 지적사항은 1년간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

따라서 시장·군수는 정부양곡보관창고의 보관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보관창고점검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시정기한을 지정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3회 이상 지적될 경우에는 보관료 차하등급 결정, 보관도급계약의 해제, 타창고 이고조치

등 부실창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기간(2017. 11. 15.~12. 1.) 중 태안군 소재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① 매월 1회이상 정부양곡보관창고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보관창고점검부에 기록한 후 3회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항이 지적될 경우에는 창고등급 사정을 실시한 후 등급을 하향 조치해야 하나 보관창고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

② 2016. 3. 30. 정부양곡보관창고 등급을 결정하면서 ○○1호창고(태안읍 ○○리 산00-0, ○○○ 소유)에 대해 창고등급사정표의 평가항목 전체를 평가하지 않았는데도 1등급 창고 기준으로 1년간(2016년 4월~2017년 3월) 14,166,500원의 보관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③ 매년 3월말 보관창고 정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창고등급을 사정하면서도 창고등급사정표의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기준 점수에 가·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해야 하나 일부 창고는 바닥이 심하게 파손되었는데도 감점(-5점)을 적용³⁾하지 않는 등 창고에 대한 등급 사정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허술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운영해야 할 해당농협에서는 벼더미가 쥐 등으로 인해 파손되어 양곡이 바닥에 떨어져 많이 쌓여 있는데도 쥐 출몰장소와 통로에다 인축에 대한 독성이 적은 것으로 가장 유효한 약제를 선택하여 투약하거나 쥐잡이용 끈끈이를 30㎡당 1개소씩 광범위하게 양곡이 보관되는 전 기간

3)○○농협의 ○○○호농창(태안군 ○○리 산000-0 소재)

동안 설치하여 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제해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농협에서는 아래 [표3] ‘정부양곡보관창고 현장확인 사진’과 같이 쥐 및 화랑곡나방 사체 발견, 쥐막이판 미설치, 창고 바닥 및 출입구 파손, 벼더미 적재시 통로 미확보⁴⁾, 출입문 틈새방지 보완, 내부 형광등 전기시설 망실⁵⁾, 외부 물받이 소실, 창고 내·외부 거미줄 및 잡초 미제거 등이 확인되는 등 주변환경 청결 유지 및 정부양곡 피해 방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표3] 정부양곡보관창고 현장확인 사진

			
보관양곡 누수		쥐 및 화랑곡나방 사체	
			
벼더미 및 환풍구 거미줄		바닥 및 출입구 파손	
			
물받이 및 형광등 망실		벼더미 적재시 통로 미확보	

4) 정부양곡 적재기준에 따른 기본공간 : 벽과 더미사이(0.6m), 통로(1.2m), 더미와 더미사이(0.6m)

5) 천정 조명은 330㎡ 당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도는 창고 측정기준 75lux이상(그 밖의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이어야 한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충청남도 태안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보관창고점검부 작성 미비치, 창고등급사정 이행 미준수, 창고관리 부실 등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매우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태안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는

[통보] 앞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에 따라 점검 후 보관창고점검부 기록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정부양곡보관창고 정기점검 시 동일한 사항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지적된 창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차하등급 적용, 도급계약 해지 등 부실창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군 및 농협 관련자에게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 및 정부양곡 보관업무의 중요성 등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